

의안번호	2220500
의 퇴 인	이수진의원
회 답 일	2026. 8. 21.
추계번호	26C3914
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9조의2(고용성평등지수 등)	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등 및 300명 이상의 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(이하 “공시대상 사업주”라 한다)의 기업별·산업별 남녀고용 평등 수준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고용성평등지수를 산출·공개할 수 있음(제1항) 제1항에 따른 고용성평등지수의 산출기준·공개 방법·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함(제2항)	재량규정
2	안 제24조의2(고용평등공시)	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고용 전반에 걸쳐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별·산업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현황 및 임금 격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(이하 “고용평등공시”라 한다)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		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고용평등공시의 효율적인 시행과 필요한 자료의 수집관리 분석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고용평등공시 전산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으며,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은 해당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하도록 할 수 있음(제5항)	재량규정
3	안 제24조의3(적극적 고용개선조치)	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실적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함(제5항)	의무규정
4	안 제24조의4(고용평등에 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의2제3항 또는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고용평등공시에 참여 또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거나 제24조의3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 등 고용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 표창을 하거나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고용평등공시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·연구·교육·홍보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(제4항)	재량규정
5	안 제24조의5(고용평등전문기관)	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고용평등공시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효율적 운영과 고용성평등지수의 개발·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고용평등전문기관(이하 “전문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하여 제19조의2,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(제1항)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2항)	재량규정

6	안 제24조의6(고용평등심의회)	고용평등공시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고용평등심의회를 둔(제1항) 고용평등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(제2항) 고용평등심의회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됨(제3항)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. 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	의무규정
---	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4조의3(적극적 고용개선조치)	미대상: 정부조직 개편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내역사업인 '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'이 성평등가족부 소관 세부사업인 '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' 사업으로 이관되었고, 2026년 기준 예산은 9억 4,900만원임
2	안 제19조의2(고용성평등지수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3	안 제24조의2(고용평등공시)	
4	안 제24조의4(고용평등에 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)	
5	안 제24조의5(고용평등전문기관)	
6	안 제24조의6(고용평등심의회)	

2. 상세 사유

□ 고용성평등지수 산출·공개(안 제19조의2)

-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국가기관등 및 300명 이상의 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기업별·산업별 남녀고용 평등 수준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고용성평등지수를 산출·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- 개정안에 따라 고용성평등지수를 개발·조사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등을 활용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, 개정안에서 고용성평등지수의 산출기준·공개방법·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고 있어,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산출 방법 및 공개 방식을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□ 고용평등공시 이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·운영(안 제24조의2)

-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용 전반에 걸쳐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별·산업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현황 및 임금 격차 등의 사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, 공시 대상 사업주는 고용평등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(안 제24조의2제1항·제2항)
- 개정안(안 제24조의2제5항)에 따라 고용평등공시 이행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고 사업주의 자료제출이 해당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제반 비용이 필요하고,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.
- 다만, 공시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시점에서 시스템 구축·운영을 위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□ 고용평등에 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(안 제24조의4)

- 개정안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고용평등공시에 참여 또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거나 평가 결과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 등

고용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 표창을 하거나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, 현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규모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□ 고용평등전문기관 지정(안 제24조의5)

- 개정안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용평등전문기관을 지정하고, 업무수행을 위한 인건비, 운영비, 사업비 등을 국가가 지원하게 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시점에서 전문기관이 수행하게 될 업무범위 및 그에 따른 지원수준을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□ 고용평등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24조의6)

- 개정안에 따라 고용평등공시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고용평등심의회를 두는 경우, 심의회 운영을 위한 위원수당 지급 등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.
- 다만, 개정안에서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시점에서 회의수당이 지급되는 민간위원 수 및 회의개최 횟수를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

- 따라서 개정안은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사항을 현 단계에서 파악하기 어려워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문지은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